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19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강대식 · 안철수 · 김장겸
구자근 · 김기현 · 이인선
강선영 · 나경원 · 서천호
김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결격사유)”를“(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u>제54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p> <p>1. <u>제54조제1항</u>-----</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